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가단15238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23. 1. 5.까지는 연 2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15.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150,000,000원을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되, 투자금 원금은 사업의 일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약정일로부터 12개월 기한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2017. 10.까지 1차 협의기간으로 지정하여 상호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투자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위 투자약정서에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의 개인용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미이행시 투자원금 및 상환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보전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 계좌로 2017. 3. 21. 50,000,000원, 2017. 5. 15. 100,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2021. 12. 1.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으로부터 12개월 기한 이후인 201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알지 못하고, F가 피고의 대리권 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F,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회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며 투자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리에 원고의 대리인이자 남편인

B이 참석하였던 점, B은 위 투자설명회에서 피고로부터 명함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2017. 5. 15. 월요일에 작성되었는데,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업무일 기준 전날인 2017. 5. 12. 금요일에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인 점, F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대리권 없이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관하여는 아무런 형사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F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과 연대보증약정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약정 부분은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F가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다른 투자자인 G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투자자의 진술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대리권 유무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기존 주장과 쟁점, 소송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및 증거신청만으로는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연